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63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변경(안 제4조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5조 제1호)

4. 관계법령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29조의2 및 제31조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사항(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)을 반영하고 변경된 인용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공무원 여비 규정

[시행 2023. 3. 2.] [대통령령 제33312호, 2023. 3. 2., 일부개정]

제29조의2(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)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.

[본조신설 2020. 3. 10.]

제31조(가산징수 등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21. 11. 30.>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>

[본조신설 2013. 1. 9.]

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

[시행 2023. 1. 1.] [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, 2022. 12. 19., 일부개정.]

제13조(세출예산 집행 기준)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2.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